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8

발의연월일: 2020. 6. 19.

발 의 자: 송옥주 · 권인숙 · 이성만

서삼석 · 박 정 · 임종성

안호영 · 박찬대 · 정춘숙

유동수 · 박용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정보공개 청구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지 분명하지 않고, 수집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개인식별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국민들의 높아진 개인정보 보호 의식에 부합하도록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	
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	
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 <u>주민등록번</u>	1 <u>생년월일</u> -
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